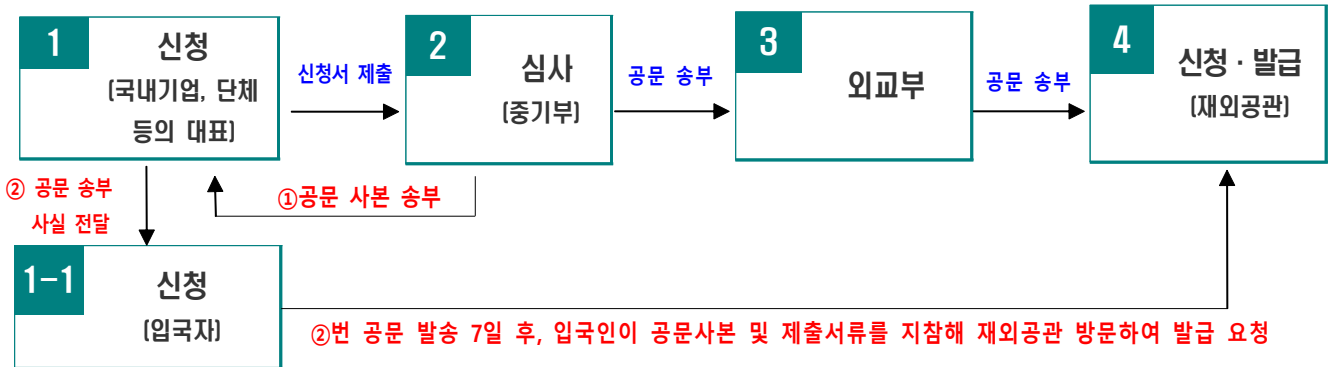


# 코로나19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등 안내 ('20. 9. 12 시행)
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동우 주무관(☎063-210-6412)

## 1.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

□ 신청 절차 (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점 감안 후 신청)



□ 신청서 작성 (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)

○ 아래 신청서 제출서류를 구비 하여 지방청과 재외공관에 각각 제출

제 출 서 류	
신청기업·단체 등 → 지방중기청(격리면제신청서)	면제대상자 → 재외공관(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)
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(국문, 서식-1)	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(영문, 서식-1) ② 격리면제동의서 (영문, 서식-2) ③ 방역수칙 이행 각서 (국문, 서식-3) ④ 면제 대상자 여권 (유효한 비자 포함) ⑤ 활동계획서 (국문 또는 영문 택1) ⑥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(호텔 예약 확인증 등), 사택 거주 시 공문 첨부 ⑦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⑧ 출·입국 항공권 사본 ⑨ 체류지 증명서 -숙소영수증 등 증빙서류, 사택의 경우 공문 첨부
② 격리면제동의서 (영문, 서식-2)	
③ 방역수칙 이행 각서 (국문, 서식-3)	
④ 활동계획서 (국문)	
⑤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	
⑥ 신청기업 정보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등)	
⑦ 체류지 증명서 -숙소영수증 등 증빙서류, 사택의 경우 공문 첨부	
⑧ 방문목적 증빙서류 - 초청장, 계약서, 사업·행사 진행 상황, 방문기업 현황 등	
⑨ 출·입국 항공권 사본, 사증 발급 확인서	
⑩ 지방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긴급성·중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	

※ 신청서상 격리면제 사유는 사업의 중요성, 긴급성, 불가피성 위주로 상세히 작성

## 2. 신청요건 등 제도 주요내용

### □ (신청요건)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

- 관련 부처가 중요 사업상 목적임을 인정하는 외국인으로서,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유효한 사증 소지하고 입국이 가능한 자

사증(8개) : B-1(사증면제), B-2(무사증), C-1(일시취재), C-3(단기방문), C-4(단기취업), D-7(주재), D-8(기업투자), D-9(무역경영) \* F 비자 불가

### □ (신청방식) 재외공관에 입국인이 대면 신청·수령 원칙

-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신청·발급 받아야 함(사후 발급 불가)
  -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
-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총 3부\* 지참

- \* ①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지참용
- ② 검역대 제출용
-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

### □ 격리면제서 유효기간

- 발급일로부터 1주일(초일불산입)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
  - 발급후 1주일이 지나면 신청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(구제조치 불가)
  - 다만, 항공기 결항(지연)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(본인 입증책임),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 (면제기간 조정 가능)

※ 국내 코로나 상황(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)에 따라 유효 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

### □ 방역준수사항

-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, 자가 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(일 1회 콜센터 전화) 실시

※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

-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, 고위험시설 출입 제한

## □ 격리면제 기간

- 모든 입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해 격리면제제도를 통해 자가격리를 면제받았더라도,
-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에 준해 활동해야 함
-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, 최대 14일까지(한국 날짜 기준)
  - \* 예시1) 한국에서 30일동안 업무를 수행해야할 경우, 14일 동안은 격리면제신청으로 인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업무 수행, 나머지 16일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
  - \* 예시2) 한국에서 3일동안 업무를 수행해야할 경우, 3일간 격리면제신청으로 인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업무 수행 후 바로 출국하거나, 남은 11일 (의무 자가격리일 14일) 동안 격리 후 일상적인 활동 가능
- 코로나-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
-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·시설 격리

## 3. 격리면제자 등 의무사항

### □ 격리면제자 의무사항

- (진단검사) 입국 시 코로나-19 진단검사 실시
- (능동감시)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
- (방역수칙 준수)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
  -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, 고위험시설(클럽, 유흥주점, 스탠딩 공연장, 노래연습장 등) 출입제한 등
- (활동계획 이행)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(날인)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
  - \*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(변경 불가)
- (격리조치)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, 자가 또는 시설격리(자기부담 최대 15만원) 조치,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이행 의무

-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
-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
-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
- 항공기, 음식점,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(감염병 의심자)로 분류되는 경우
-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

※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, 입국불허·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

-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

## □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

- (방역대책 수립)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(행사장, 숙소, 이동 교통수단 등)을 수립 및 이행
  - \*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·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,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
  - \* 입국 후 14일간 대중교통 이용 절대 불가
-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
  -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, 불가피 할 경우 1~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
  -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
-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\* 마련
  - \* 격리공간, 체온계,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
- 활동계획서 이행관리 철저,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\*
  - \*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(위반사항 포함) 및 출국 여부 등 보고
-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\*
  - \*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## 신청기업·단체 등 안내문

1. 격리면제 신청기업·단체 등(이하 신청인)은 사전에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(행사장, 숙소, 이동수단 등)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.
  - \*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·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,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
2.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대규모 입국하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.
  -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, 불가피할 경우 1~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
3. 신청인은 격리면제자 중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\*을 마련해야 합니다.
  - \* 격리공간, 체온계,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
4.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활동계획서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, 격리면제자들이 일정 종료 후 출국시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  - \*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(활동계획서 포함)는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(내용변경 불가)
  - \*\* 격리면제자의 활동 결과(위반사항 포함) 및 출국 여부 보고
5. 신청인은 필요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\*하여야 합니다.
  - \*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